

'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심사보고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11. 21일 김제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'97. 11. 25

다. 상 정 일 자 : 제3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('97. 12. 22)
총무위원회에 상정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 : 회계과장 문충근)

가. 제 안 이 유

-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지구내 진입로 확장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
-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요촌택지 개발지구내의 국유토지 매입

나. 주 요 골 자

-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지구내 진입로 확장을 위한 김제시 하동 342번지의 26필지 9,407㎡를 302,500천원에 매입
- 요촌택지 개발지구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김제시 요촌동 77-2번지 339㎡를 179,670천원에 매입

3. 전문위원 검토 보고

-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저촉되거나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

4. 질의 및 답변

- 질의(의원 정영환)
여중학교 주차장 부지가 입구쪽인데 보고한 액수로는 모자랄 것 같음
- 답변(회계과장 문충곤)
공시지가입니다. 감정을 해야 합니다.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감정하므로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.

- 질의(의원 정영환)
지장물 철거 보상까지 하여야 하는가?
- 답변(회계과장 문충곤)
나대지입니다. 국유지라 매입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하며, 30%가 시수입으로 들어옵니다.

- 질의(의원 김원중)
이 주차장 부지 바로옆에 4층건물을 건축하는데 4층건물 임대등 영업을하면 본 주차장은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못될텐데?
- 답변(교통행정과장 정창섭)
주차난 해소를 위해 요촌동 77-2번지 103평이 나대지로 되어 있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코자함
김원중의원께서 지적하신 4층건물은 뒷편에 100평정도의 주차장이 있음
공영주차장과 별도 사용하게 될것임

- 질의(의원 최병대)
주차장 부지를 안사면 어떻게 되는가?
- 답변(회계과장 문충곤)
임대를 하거나 매입희망자가 있으면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함

- 질의(의원 최병대)
우리시 형편상 김제여중 앞에는 주차장이 필요없고, 금성약국, 박약국 근처 등에 주차장이 필요한데?
- 답변(회계과장 문충곤)
주차난 해소책도 되지만 재산관리상 30%가 시세입에 들어와 시재정에 도움이 됨

- 질의(의원 최병대)
현재는 주차장이 목적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주차장이란 소릴 빼야조
- 답변(회계과장 문충곤)
우선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공중시설이어야만 재정경제원에서 매각합니다.

5. 토 론

- 의원 최병대 : 주차장 부지는 이 지역이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 지역이 아니므로 시재정형편상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제외하는 것이 좋겠음

- 의원 정영환 :
 - . 추경때 주차장 예산을 세웠음
 - 일반인도 국유지를 불하 받으려 하는 사람이 있음
 - 주차장도 확보하고 재산관리상 도움이 되므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함

- 의원 최병대 : 노인복지타운 진입로 부지 매입건은 승인하고, 주차장부지매입건은 승인치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안 제안

- 위원장 김유웅 :
 - . 최병대 의원의 수정안대로 노인복지타운 진입로 부지는 승인하고, 주차장부지는 불승인시켰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는지?
 - 이의 없음 —

- . 노인복지타운 진입로 부지매입건은 승인하고,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불승인키로 합의

6. 수정안의 요지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12. 22(의원 최병대)
- 나. 수정이유 : 요촌지역 주차장 부지는 당장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고, 시재정형편상 시기가 적절치 않음
- 다. 수정주요골자
 - .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지구내 진입로 확장을 위하여 김제시 하동 342번지의 26필지 9,407㎡를 302,500천원에 매입
 - ※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김제시 요촌동 77-2번지 339㎡ (179,670천원) 매입건은 삭제

7. 심 사 결 과

- 총 11명 위원중 8명 위원이 참석, 표결결과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